

[일련번호 : 11]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7.29.)에 의하여 출장을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5호, 2024.8.26.)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2. 여비지급 기준 나에 의하면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4의2호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또한 '2017년 급량비, 여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기획예산과-226, 2017.1.5.)에 의하면 여비는 월 14일 이내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에서는 2024. 8월부터 2024. 10월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60,00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연 번	대상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지급사유	세부내용
	직급	성명			
1			40,000원	지급기준 미준수	24.10월 월 출장일수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일 2회 9일, 4시간 미만 9일, 총 18일 지급)
2			20,000원	지급기준 미준수	24.10월 월 출장일수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4시간 이상 1일, 일 2회 5일, 4시간 미만 10 일, 총 16일 지급)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60,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